

SH-AD-A302-1

# 인증신제품적용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2019.07.30

 서울주택도시공사



# 인증신제품 적용 심사위원회 운영기준

## 1. 목 적

이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 제17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내 인증신제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는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심의대상

본 기준은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설계 및 공사에 적용 가능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신제품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자재에 한하여 그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을 심사 및 의결한다.

## 3. 개최시기

본 위원회는 인증신제품 업체의 적용신청에 따른 건축기술부장의 심사요청에 의하여 분기별 1회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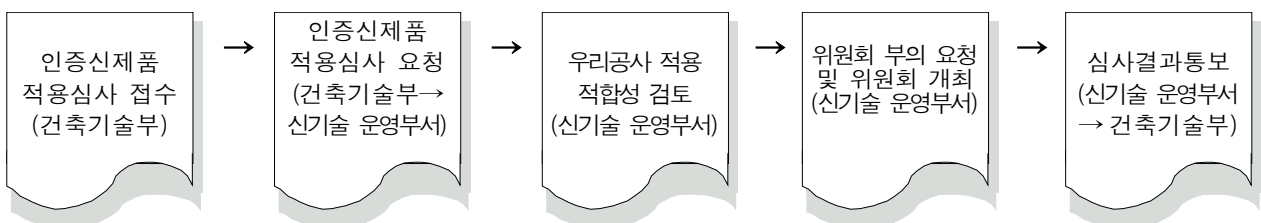
## 4. 접수

건축기술부장은 매 분기별로 업체로부터 적용신청을 접수받아 우리공사 적용여부를 신기술 운영부서에 심사 요청한다.

## 5. 위원회 부의

신기술 운영부서는 심사요청 인증신제품에 대하여 우리공사 적용 적합성 등을 사전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며, 개최 3일전에는 일정 및 안건 등을 위원별로 사전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 6. 부의절차



## 7. 위원회

### 7.1 위원회 구성

가. 위원회 위원장은 신제품 운영부서 처장, 부위원장은 신제품 운영부서 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는 당연직을 포함한 내부위원 3인(해당 공종 부장) 및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단, 사안별로 위원회 구성 및 내·외부 위원수를 총 인원수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배제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제품업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나 이해 당사자 (대리관계를 포함)인 경우
- 2) 위원이 신제품업체에 대하여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 신제품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시외이사 포함)
- 4) 기타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위의 1)~4)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7.2 위원회 운영

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나. 위원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3인 이상의 위원 참석으로 한다.

다. 위원회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결의를 진행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인증신제품의 우리공사 적용가능여부 및 적용방법에 대하여 심사하고 의결한다.

1. 제품규격의 적정성
2. 시방성능 적정성
3. 인증신제품이 복수일 경우 제품별 적용비율
4. 적용지구 및 적용비율
5. 기타 해당 인증신제품 적용과 관련한 일체 사항

### 7.3 책임과 권한

가. 위원장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장 불참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불참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공종별 신기술 운영부서

1. 인증신제품에 대한 사전검토 및 부의안 작성
2. 위원회의 문서화된 절차의 유지 관리 및 위원회 운영
3.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을 기록, 작성
4. 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5. 위원회 개최 시 간사로서 사전검토내용 작성
6. 적용가능지구 사전 검토

#### 7.4 의안설명 및 기록유지

가. 의안은 운영부서장 또는 운영부서 담당자가 설명한다.

나.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사항 기록 작성을 위하여 운영부서 담당자를 서무로 둔다.

다. 위원회의 심사 후에는 심사 일시·장소·내용 등이 수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사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전에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공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5 위원회 심사 및 의결사항의 조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해당부서 본부장방침을 득하여 개최 후 7일 이내에 건축기술부로 통보한다.

### 8. 부칙

가.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기술심의수당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나. 본 운영기준은 설계 및 시공에 적용가능한 기술분야에 한하여 적용한다.(인증신제품 중 일반 용품 및 제품은 제외)

### 9. 붙임

가.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부의 및 의결서 양식.

부 의 안
-------

제 회 위 원 회	
년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1. 심의요청부서 :

2. 해당근거 :

3. 사 유 :

4. 심사의결 요구사항 :

5. 붙임. 인증신제품 적용심사 사전 검토(안)

2 0    년    월    일

부의자

인

# 의 결 서

제 회 위 원 회			
년 월 일	200 년 월 일	의안번호	제 호
의 제			

1. 제안부서 :

2. 제안근거 :

3. 제안사유 :

4. 심사·의결사항 :

제 회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음.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회의록 1부(별도첨부)

## 제 회 위원회 소집통보

수 신 :

다음과 같이 위원회 소집을 통보합니다.

1.일 시 :

2.장 소 :

3.의 안 :

의 안 번 호	의 안 제 목	제 안 자	소 관 부 서

4.부의안건 : 별첨. 끝.

년 월 일

SH공사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 제 회 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출석위원

(1)

(2)

(3)

(4)

4. 회의내용

## 인증신제품 적용심사관련 사전검토서

1. 제품명 :
2. 인증번호 :
3. 인증유효기간 :
4. 사전검토내용
  - (1) 제품규격검토 :
  
  - (2) 시방성능비교 :
  
  - (3) 유사제품 인증여부 :
    - ※ 유사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가격, 시공성, 성능,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의무구매량 20%에 대한 적용순위 및 적용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
  
  - (4) 의무구매 적용가능 사업지구
  
  - (5) 기타 부의해야할 사항